구 분	작 성	검 토	승 인
성 명			
일 자			
서 명			

피피에스 주식회사



- 목 차 -

총 칙

인 사

출근 및 결근

근로시간 및 휴일

복 무

급 여

경리 및 회계

복 지



사규번호	page
제정일자	1/9
개정일자	1/9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[명 칭]

이 규정은 피피에스 주식회사(이하 "회사'라고 한다)라고 칭한다.

제 2 조 【적용범위】

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 3 조 [규정준수의무]

회사 또는 회사에 존속된 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행한다.

제 2 장 인 사

제 4 조 [채 용]

채용은 소정의 조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공개 경쟁의 형식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한 특별 채용이 있을 수 있다.

제 5 조 【채용자격 및 제출서류】

- 1. 신규 채용자는 학력, 경력 또는 기술 등을 회사의 기준으로 심사하여 해당직에 채용하되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- 1) 신체 건강하고 용모와 태도가 단정한 자
 - 2) 근무지와 보직에 불만이 없는 자
 - 3)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
- 2. 신규 채용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.
 - 1) 이력서 및 인사기록카드
 - 2) 서약서
 - 3)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 - 4) 경력증명서(경력사원에 한함)
 - 5) 사 진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
 - 6) 주민등록등본
 - 7) 범죄사실 증명서
 - 8) 보유 경력 또한 기술에 대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 - 9)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할 시 제출하는 서류
- 3. 회사와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.



사규번호	page
제정일자	2/9
개정일자	2/9

제 6 조 [수 습]

- 1.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. 단, 보유 경력이 있거나 특별 채용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단축 및 면제 할 수 있다.
- 2.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.
- 3.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낮거나 소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수습기간 연장 또는 근로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가한다.

제 7 조 [승 진]

- 1. 정기 승진은 매년 5월 1회 실시한다.
- 2. 승진은 인사고과 결과와 직급별 . 직무별 근무연수를 참작하여 실시한다.
- 3. 승진의 제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된다.
 - 1) 징계받은 자
 - 2) 휴직중인 자
 - 3) 6개월 미만 근속자
 - 4)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

제 8 조 [휴직 , 복직 , 퇴직]

- 1. 휴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.
 - 1) 업무 외의 상병(사고포함)으로 결근 만 1개월 이상
 - 2)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 시
 - 3)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근무에 장기간 지장을 주는 경우
 - 4) 전 각호 이외의 사유로 휴직이 필요함을 인정한 경우
- 2. 휴직기간은 휴직사유,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, 휴직기간의 급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할 수 있다.
- 3. 휴직기간이 만료 및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복직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고 기간 내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한다.
- 4. 복직한 자는 휴직 전의 직무로 복귀한다. 단, 그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있다.
- 5. 퇴직시 보안서약서, 사직서를 제출한다.
- 6. 퇴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.
 - 1) 개인사유로 퇴직원을 제출한 경우
 - 2) 사망한 경우
 - 3) 일정기간을 두고 고용된 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
- 6. 전항 제 3호 이하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퇴직예고를 한다.
- 7. 전항 제 3호 이하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일까지 근무한다.



사규번호	page
제정일자	2 /0
개정일자	3/9

제 9 조 [해 고]

- 1. 해고를 통보할 때는 30일 전에 본인에게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. 단,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아 도 된다.
- 2.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통상 해고할 수 있다.
 - 1)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
 - 2) 근무태도 또는 능률이 현저히 불량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
 - 3) 기타 경영상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
- 3.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해고할 수 있다. 단, 정상에 따라서는 권고사직, 감봉에 그칠 수 있다.
 - 1) 무단 결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근무일 이상에 이른 경우
 - 2) 규정에 따른 계획서, 보고서(주간 및 월간 보고 등)를 보고 없이 미 작성하는 경우
 - 3) 동료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폭언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
 - 4) 직무상의 지시에 부당한 태도로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
 - 5) 회사의 재정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
 - 6) 회사의 기밀 또는 회사의 실정을 왜곡하여 외부로 누설하는 경우
 - 7) 회사의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
 - 8) 사회 범죄 등 형법상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
 - 9)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
- 4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.
 - 1) 3개월 미만의 일용직
 - 2) 2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
 - 3) 6개월 미만의 월급 근로자
 - 4) 계절적 업무에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및 수습 근로자

제 3 장 출근 및 결근

제 10 조 【출근 및 결근】

- 1. 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한다. 출입 장치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. (출장 및 파견, 기보고 시에는 제외)
- 2. 직원은 여유시간을 가지고 출근하여 시업시간에 즉시 업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한다.
- 3.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사전 제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한다.
- 4. 질병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이 계속될 경우에는 결근계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한다.
- 5. 사전 또는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.



사규번호	page
제정일자	4/9
개정일자	4/9

제 11 조 【지각 . 조퇴 . 외출】

- 1. '지각'이라 함은 시업시간 시작 후 1시간 이내에 출근함을 말한다.
- 2. '조퇴'라 함은 시업시간으로부터 7시간 경과 이후 종업시간 이전에 퇴근함을 말한다.
- 3.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장의 허가를 받는다.

제 4 장 근로시간 및 휴일

제 12 조 [근무시간]

- 1. 직원의 근로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.
 - 1) 근무시간 09:00~18:00(1일 8시간 근무)
 - 2) 휴게시간 12:00 ~ 13:00 (총 60분)
- 2. 시 . 종업시각은 전 호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지정하여 시행한다.

제 13 조 [유급휴일]

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정한다.

- 1) 국경일 또는 공휴일
- 2) 기타 회사에서 지정한 날

제 14 조 【산전 . 산후휴가】

회사는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산전 . 산후휴가를 준다. 다만, 임신중인 여직원이 유산 . 조산 . 사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준다.

- 1) 임신 8개월 이후 조산 . 사산의 경우 : 만기 출산 시와 동일한 휴가 적용
- 2) 임신 4개월 이상 7개월 이하 유산 . 조산 . 사산의 경우 : 산 후 1개월
- 3)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 . 사산의 경우 : 산 후 1주일

제 15 조 【특별휴가】
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정의 절차에 의해 특별유급휴가를 적용한다.

- 1) 본인 결혼
- 2) 자녀 결혼
- 3) 본인 또는 아내의 출산
- 4) 배우자 및 자녀 사망
- 5) 회사에서 인정하는 기타 사유



사규번호	page
제정일자	F /0
개정일자	5/9

제 4 장 복 무

제 16 조 【복무자세】

직원은 신의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- 1) 회사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한다.
- 2)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.
- 3)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성실히 처리한다.
- 4) 회사의 신용을 하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.
- 5) 회사 및 직무상 기밀은 누설하지 않고 엄수한다.
- 6)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근무시간에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.
- 7)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 또는 타 회사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않는다.
- 8) 사내 청결유지, 화재방지 등 제반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한다.
- 9) 회사의 제규정 또는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10) 전항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 할 수 있다.

제 17 조 【손해배상】

직원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.

제 18 조 【직무이탈금지】

직원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소정의 절차에 의거, 소속장의 결재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않는다.

제 5 장 급 여

제 19 조 [급여체계]

급여는 기본급여, 퇴직금으로 구분한다.

제 20 조 [지 급]

- 1. 급여는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장은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.
- 2. 휴직 . 정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회사재정에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급여의 전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- 3. 전 항의 지급보류는 손실보전이 완료되는 즉시 해제하여 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.
- 4. 감봉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은 사우회 기금으로 사용한다.



사규번호	page
제정일자	6/9
개정일자	0/9

제 21 조 【기본급】

'기본급'이라 함은 급여의 기본을 말하며 그 지급액은 급여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2 조 【퇴직금】

- 1. '퇴직금'이라 함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또는 재직 중 사망할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.
- 2.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을 단위로 지급하며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.

제 6 장 경리 및 회계

제 23 조 【경리업무】

회사는 경리업무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.

- 1) 금전 및 어음 출납, 보관과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
- 2) 채권 . 채무에 관한 사항
- 3) 장부의 정리 및 보관
- 4) 재고자산 경리에 관한 사항
- 5) 고정자산 경리에 관한 사항
- 6) 예산 . 결산에 관한 사항
- 7)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

제 24 조 [경리 담당자]

- 1. 회사의 경리 담당자는 회사의 경리업무를 총괄한다.
- 2. 경리 담당자는 경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건전한 경영과 능률향상을 도모해야한다.
- 3. 전 항의 지급보류는 손실보전이 완료되는 즉시 해제하여 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.

제 25 조 【전표 및 장부】

- 1. 경리 담당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장부 및 전표를 갖추어야 한다.
 - 1) 대차대조표
 - 2) 손익계산서
 - 3) 회계전표철
 - 4) 총계정원장
 - 5) 보조원장
 - 6) 증빙서류
 - 7) 기타 기록 및 보고서류



사규번호	page
제정일자	7/9
개정일자	1/9

- 2. 회계전표는 입 . 출금전표, 대체입 . 출금전표로 구분하며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1) 발행년월일
 - 2) 거래처명 및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
 - 3) 거래내용
 - 4) 거래금액
 - 5)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
- 3. 경리 담당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지출결의서를 반송한다.
- 4. 경리장부는 매년 초에 경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중에 경신한다.
- 5. 경리 장부는 회사에서 지정한 시기별로 마감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이월한다.
- 6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리장표에서 정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말소부분에 작성 책임자, 전표확인 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.
 - 1) 회계전표
 - 2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재산목록 기입장, 계산서류부속명세서
- 7. 경리장부는 회사에서 지정한 기간동안 보존한다.

제 26 조【출납관리】

- 1. 경리 담당자는 회사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 금전 및 어음의 출납을 항상 기록한다.
- 2. 현금을 지급할 때 전표가 없거나 지급 전표에 책임자의 서명이 없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.
- 3. 어음행위는 사장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명의로도 행위를 할 수 있다.

제 27 조 【재고자산】

- 1. '재고자산'이라 함은 완성품, 미완성품, 원료품, 재료품 등을 말한다.
- 2. 경리 담당자는 재고자산의 입 . 출고, 관리, 보관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- 3. 경리 담당자는 매년말 또는 매기말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. 단, 예상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재고자 산에 큰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.
- 4. 경리 담당자는 재고자산의 변질,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에 사장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한다.
- 5. (보류)경리담당자는 재고자산의 수불을 기록하여 관리한다.
- 6. 재고자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.
 - 1) 수입가격
 - ① 구입품 : 구입가격에 구입직접비를 가산한 금액
 - ② 생산품: 제조원가
 - ③ 재생품 및 회수품 : 평가액
 - 2) 수불가격

월간 가중 평균법에 의한 원가법으로 한 계산가격에 의한다.



사규번호	page
제정일자	8/9
개정일자	0/9

제 28 조 【고정자산】

- 1. '고정자산'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
 - 1) 유형 고정자산

건물, 구축물, 기계장치, 공구, 기구, 차량 운반구, 토지, 비품, 건설중인 자산

2) 무형 고정자산

특허권, 상표권, 전화 가입권, 전용측선 이용권 등 기타

- 2. 경리 담당자는 매기말 회사의 유형고정자산 현상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장에게 품의 결재를 받아 고정 자산대장을 정리한다.
- 3. 건설 미완료 인 것, 구입한 경우 등 부대비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하여 건설 완료 후 고정자산계정에 정리한다.
- 4. 고정자산의 개량 . 보수 . 취득 . 매각 . 제각 등 전반적인 사항들은 모두 사장의 결재에 따른다.
- 5. 고정자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.
- 6. 고정자산의 현상을 유지, 원능력 회복에 따르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써 비용으로 한다.
- 7. 토지를 제외한 유형 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매기 감가상각을 실시한다.

제 29 조 [원가계산]

- 1. '원가계산'이라 함은 원가를 생산 . 판매수량과 관련하여 요소별, 부분별, 원가부담별로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.
- 2. 원가계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월말까지로(1개월) 한다.

제 30 조 [결 산]

- 1. 결산은 월차결산 및 기말결산으로 한다.
- 2. 경리 담당자는 매기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.
 - 1) 대차대조표
 - 2) 손익계산서
 - 3) 기타 결산에 필요한 서류

제 7 장 복 지 규 정

제 31 조 【복 지】

회사는 복지규정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.

- 1)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가정의날로 17시까지 근무한다.
- 2) 징검다리 휴일시 연차사용을 보장한다.
- 3) 근로자의 요청시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. 금액과 이율은 회사와 논의하여 정한다.



사규번호	page
제정일자	0.70
개정일자	9/9

- 4) 유연근무를 적용(8시~9시 출근, 17시~18시 퇴근) 한다. 근무자는 출근부를 필히 작성하며 일 8시간이상 근무한다.
- 5) 근무시 간식과 음료를 제공한다.
- 6)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한다.
- 7) 교육비, 도서구매비를 지원한다.
- 8) 해당월 생일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.
- 9) 장기 근속자에 대해 만 3년 근무시 5일의 특별유급휴가(안식일) 를 지원한다. 단 안식일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지정한다. 재입사시에는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10) 안식일 휴가 일시는 휴가사용 3개월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여 결정한다.

부 칙

제 1 조 【시행일】

이 규정은 2022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